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6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5월 4일

나. 발 의 자: 차인영 의원

다. 회부일자: 2023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강현숙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아동학대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,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개정 변경
- 목적, 정의, 다른법령과의 관계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 ~ 제4조)
- 아동학대 신고의무,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안 제5조 ~ 제6조)
-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, 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(안 제7조 ~ 제8조)
- 교육, 홍보,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(안 제11조 ~ 제13조)
-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최근 아동학대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,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제명을 현행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여 제명을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구체화하였고,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를 일부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는 「아동복지법」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각각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조항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,
- 안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 대행을 기존 ‘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’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,
- 안 제9조에서는 예산지원 대상을 ‘관련 기관 또는 시설’로 규정하여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,
- 안 제10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개정하였으며,
- 안 제11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홍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,
- 안 제13조에서는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였으며,
- 안 제14조에서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아동권리보장원의 ‘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’(이하 “통계”라 한다)에 따르면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2021년 아동학대사례는 전년 대비 21.7%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.
-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등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를,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, 이와 함께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차인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 2023. 5. .
 일: 발 의 자 : 차인영 의원
 찬 성 자 : 유승용, 이성수, 이순우
 의원(3인)

1. 제안이유

최근 아동학대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,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전환됨에 따라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개정 변경
- 나. 목적, 정의, 다른법령과의 관계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 ~ 제4조)
- 다. 아동학대 신고의무,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, 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(안 제7조 ~ 제8조)
- 마. 교육, 홍보,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(안 제11조 ~ 제13조)
- 바.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(안 제14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
-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 5. 4. ~ 5. 8.)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, 후견인, 아동을 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·감독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아동학대”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아동보호전문기관”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방지

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
5. “아동학대전담공무원”이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추고 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(이하 “아동학대예방 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예방 등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2.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조사
3.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

③ 구청장은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지도·감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5조(아동학대 신고의무)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아동학대전담공무원)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변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2.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)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아동학대예방 등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
2. 예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친 사항

②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9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육)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홍보)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, 캠페인,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홍보를 위하여 물품을 제작·배부할 수 있다.

제12조(디지털성범죄 예방 등) 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아동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·유포 협박·저장·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

을 할 수 있다.

제13조(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, 교육기관, 의료기관, 법원, 수사기관,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4조(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)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국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법 제29조의7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5조(관련정보의 제공)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